

●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-0373호

「관광진흥법」 제49조에 의거,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‘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’을 수립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0일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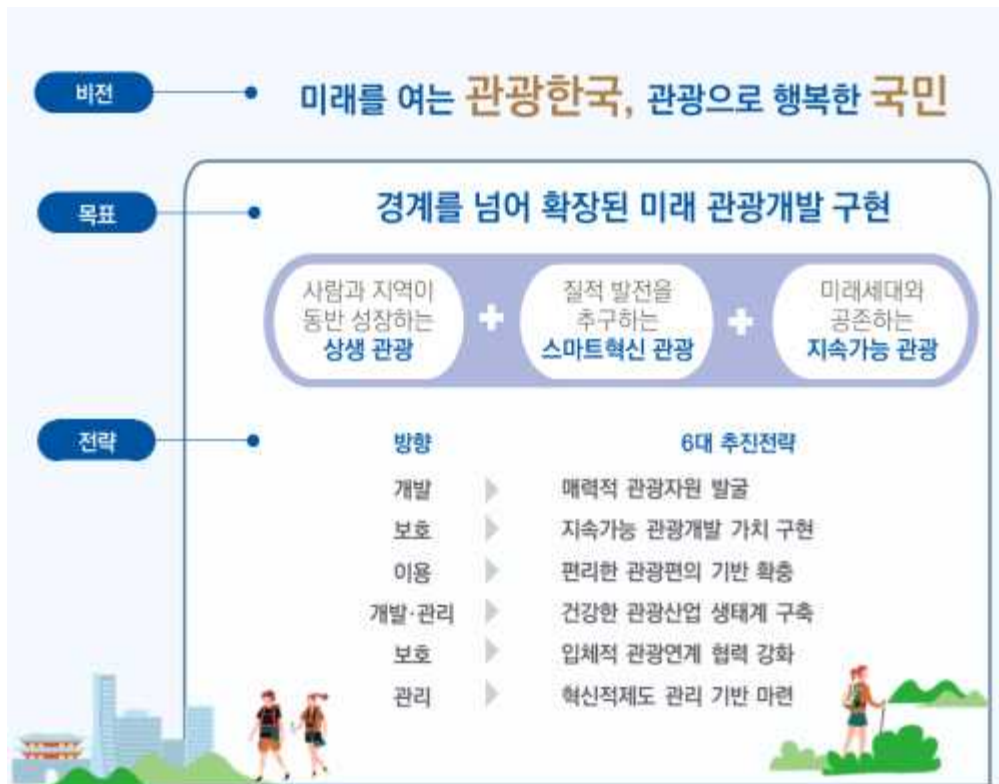
1. 수립 사유

「관광진흥법」에 의거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‘관광개발기본계획’의 기간만료 도래(현행 제3차, 2012~2021년)에 따라, ‘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(2022~2031년)’ 수립

2. 계획의 범위

- 가. 내용적 범위 : 「관광진흥법」 제49조제1항의 제1호~6호에 관한 사항
- 나. 시간적 범위 : 2022~2031년(10개년) /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
- 다. 공간적 범위 : 전국

3. 주요내용



4. 기타사항

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(<http://www.mcst.go.kr>)에 게시